

제256회 여수시의회 임시회에서 의결된 여수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를 이에 공포한다.

2026년 8 월 14 일

여 수 시 장 서 매 능



여수시 조례 제2296호

붙임 여수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1부

여수시 조례 제2296호

여수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여수시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장소 등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휴게음식점영업”을 “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으로 한다.

제5조제1항 중 “영업자에게 을”을 “영업자에게”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 · 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안
제2조(영업장소)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이하 “시행규칙”이라 한다)별표 15의2 제10호에 따라 음식판매자동차를 이용하여 <u>휴게음식점영업</u> 또는 <u>제과점영업</u> (이하 “음식판매자동차 영업”이라 한다)을 하려는 경우 영업장소는 다음의 각 호의 시설 또는 장소로 한다.	제2조(영업장소) ----- ----- ----- ----- <u>휴게음식점영업, 일반음식점영업</u> ----- ----- ----- ----- -.
1. ~ 4. (생략)	1. ~ 4. (현행과 같음)
제5조(영업신고 표시) ① 시장은 이 조례에 따른 음식판매자동차 <u>영업자에게</u> 을 다른 무신고업소 등과 구분하기 위하여 영업신고 표시 등을 부착하게 할 수 있다.	제5조(영업신고 표시) ① ----- ----- <u>영업자에게</u> ----- ----- -----.
② (생략)	② (현행과 같음)